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B-6BL 중흥S-클래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I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고양지축공공주택지구 B-6블록
- 공급규모 :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B-6블록 중흥S-클래스
- 총 732세대 (지하2층, 지상29층, 7개동)

※ 이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8호 가목 3)에 의한 이주대책용 주택으로 고양지축 이주대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를 일반분양하는 주택임. (2018.02.12 이주대책자를 대상으로 사전공급신청 접수 및 동·호수 주첨하여 이주대책자 당첨된 3세대를 제외한 729세대를 일반분양함)

II 일정 계획

구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	2018. 03. 16(금)	고양 지축지구 중흥S-클래스 홈페이지 http://gy2-sclass.com/
• 견본주택 개관(예정)일	2018. 03. 16(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3-5번지 고양 지축지구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
• 특별공급 신청일자	2018. 03. 21(수) 10:00 ~ 14:00	견본주택 방문접수
•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2018. 03. 21(수) 17:00	당사 견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 게재
• 동·호수 발표	2018. 03. 29(목)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개별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특별공급 정역신청 과열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각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당첨자만을 선정. 동·호수 주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

(동·호수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I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별 주택형별 배정 세대수

※ 해당 공공주택지구는 LH이주자 주택공급지역으로 우선공급 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 결정함

구분	72m ²	84A m ²	84B m ²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통합 물량-	16	48	8	72

IV 당첨자 선정 방법

1. 해당기관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당사에 추천을 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공급 신청자가 반드시 해당 신청일 [2018.03.21(수)]에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견본주택(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3-5번지)으로 방문접수 하셔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2.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3. 당첨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름.
 4. 일반(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주택형별 무직위 추첨으로 기관을 선정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 당첨자 선정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II

특별공급자격

■ 자격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3.16.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 및 청약자격요건을 갖춘 특별공급 대상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기관장(지자체, 국가보훈처, 국방부, 중소기업청 등)의 추천을 받으신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 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해당점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 행정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동·호수 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됨)

III 신청시 구비서류

- 아래의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8. 03. 16. 예정)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본인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시 (각 1통)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접수 가능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접수 장소에 비치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직접 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주민등록증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2you.com)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인장	대리인	

IV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8. 03. 16.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자 명단 통보 시 신청자의 주택형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향후 주택형 변경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미신청·미계약 동·호수 발생시에도 동·호수 변경불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서약서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제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점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시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진본여부를 확인하여, 위조서류가 제출된 경우 지체 없이 인허가관청에 통보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격,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8. 03. 16(금) 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건본주택 및 사이버 건본주택(<http://gy2-sclass.com/>)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